

## 오산시의회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

[장인수 의원 대표발의]

#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22.0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오산시의회 의원 및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출장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#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2년 1월 6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447-701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## 자치법규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

#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

(장인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제8-627호
----------	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년 12월 30일

발의의원 : 장인수, 김영희, 김명철, 이상복,  
성길용, 이성혁, 한은경 의원

## 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22.01.13.시행)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나. 오산시의회 의원 및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출장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## 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## 오산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오산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)**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오산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

**제3조(수당)** 오산시의회 의원 및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4조(여비)** 오산시의회 의원 및 오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는 「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준용하되,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**【별첨】**

### **관계법령 발췌서**

**「지방자치법」** 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1.12., 전부개정]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**「지방공무원법」** [시행 2022.1.13.] [법률 제18472호, 2021.10.8., 일부개정]

제6조(임용권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 및 지방의회의 의장[시·도회의의 의장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회의 의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(이하 “임용권”이라 한다)을 가진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,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③ 임용권자(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